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

충청남도과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재)충남경제진흥원장

1. 시설개요

(시설개요)

- 시설명: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 시설규모: 연면적 7,287.02㎡(지하1층, 지상4층)
※ 승강기 현황: 승객용 2대(15인승), 화물용 1대(1.2ton)
- 주차대수: 101대(일반 84대, 전기차충전기 10대, 장애인 7대)
- 운영기관: 충남경제진흥원

(시설위치)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1(舊 청양여자정보고)

(주요시설) 입주공간, 회의실, 교육실 등

층 별		시설 현황
지하	1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지상	1층	(식품)시제품제작실, 판매장, 카페, 운영사무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 영상제작실, 공유오피스, 휴게실
	3층	입주공간(17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 휴게공간
	4층	입주공간(17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 휴게공간 ※ 제2종근생(제조업소) 10실

2. 모집개요

(입주유형) 상주기업, 등록기업 ※ 1개 유형만 선택 가능

구분	상주기업	등록기업(비상주)
입주공간	3층(17개소) / 4층(17개소)	해당없음
공용공간	시제품제작실, 영상제작실, 판매장, 회의실, 교육실 이용 권한 부여	

(모집규모) 상주기업 17개사, 등록기업 50개사

입주공간 층별 모집 개소	
3층(6개소)	4층(11개소)
31.86㎡(3), 64.33㎡, 65.07㎡, 70.34㎡	30.88㎡, 31.57㎡, 31.86㎡(5), 64.33㎡, 65.07㎡, 70.34㎡, 132.17㎡

※ 층별 배치도 및 임대료 [붙임] 참고

(모집대상) 충남지역 현안문제(탄소중립, 지역소멸, 농촌, 농업활성화 등)를 기업가치 목표로 설정한 기업 우선 입주지원

○ (1순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 가. 충청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도에 소재를 두고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전환을 준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한다)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 라.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도에 소재를 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 단, 임대료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9호~12호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함

- (2순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 예정인 도내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예비창업자, 소셜벤처기업 및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자
- (3순위) 타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 예정인 타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예비창업자, 소셜벤처기업 및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자
- (4순위)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5인 미만의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입주제외 대상(상주기업에 한함)

- 국가 또는 도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제재 중인 자(기업)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 기타 혁신타운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추진일정)



* 매월 심사위원회 평가(평가일 전월 25일 신청 접수분)

(입주기업 혜택)

지원기관	인센티브	상주기업	등록기업	문의처
충청남도	○ 혁신타운 상주기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x	041-635-3321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가점부여	○	x	
	○ 입주기업 코칭 프로그램(임팩트 투자 기업 컨설팅) 운영	○	○	
	○ 실험 회계프로그램 '실험 얼마예요' 무상지원(선착순)	○	○	
	○ 실험 앱 '실험 라이프온'을 통한 홍보 판로 지원	○	○	
	○ 공공구매 박람회 등 유통판매전 참가 우선	○	○	
	○ 화성농협 칠갑산 NH호텔 할인(10%)지원	○	○	
	○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이자 보전을 상향(2%→2.3%)	○	x	
청양군	○ 주거비 지원 선정 : 월세의 60%(최대 월 212천원) 전세자금대출금 이자의 50%(최대 연 1,000천원)	○	○	041-940-4074
	○ 청양군 농산물 특화가공센터 연계 지원	○	○	
	- (무료) : 교육장, R&D 연구개발실(개발 지원) 이용 - (감면) : 시설물(가공 보관 검사 등) 사용료(10~30% 감면)		○	
충남 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상시 상담 서비스 제공	○	○	041-424-4000
	○ 충청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입점 지원 (농특산물 및 공산품)	○	○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교육 우선 참여 혜택	○	x	041-406-8127
	○ 입주기업 특화 컨설팅(정기 경영컨설팅, 기업진단BM컨설팅 등)	○	x	
	○ 지역 연계행사 우선 참여 혜택	○	x	
	○ 입주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상시 지원사업 정보 안내	○	x	
	○ 마을기업 제품 고도화 프로그램 우선 참여 혜택	○	x	
	○ 연계기업(관) 서비스 이용료 할인	○	x	

- 회의실 및 교육실 무상지원(상주기업, 등록기업)
- 판매공간 사용료 50% 감면(상주기업, 등록기업)
- 공유오피스 무상지원(상주기업, 등록기업)

3. 입주조건

(입주기간)

- 최초 입주기간은 1년으로, 이후 1년 단위 연장 계약 가능
- 최대 입주 허용 기간은 4년이며 심사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

(입주절차)

-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

(입주부담금)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임대료, 일반관리비, 수도광열비

- 임대보증금: 임대료 12개월분으로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임대료: 실별로 상이함

구분	전용면적									
	30.88㎡ (9.36평)	31.57㎡ (9.57평)	31.86㎡ (9.65평)	33.01㎡ (10평)	33.92㎡ (10.28평)	64.33㎡ (19.49평)	64.87㎡ (19.66평)	65.07㎡ (19.72평)	70.34㎡ (21.32평)	132.17㎡ (40.05평)
유형A	95,170	97,300	98,190	101,730	104,540	198,270	199,940	200,560	216,810	407,390
유형B	475,900	486,540	491,050	508,710	522,760	991,410	999,760	1,002,880	1,084,100	2,037,020

-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실별 임대료 적용면적은 전용면적+공용면적임
- ※ 유형A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9호~12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타 지자체 소재 제외),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에 적용
- ※ 유형B는 유형A 적용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
- ※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선(先)납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월 단위 분할납부 가능
 - 일반관리비: 시설관리용역비, 냉난방비, 인터넷사용료 등 부과
※ 일반관리비는 매월 별도 부과하며 전용면적에 따라 실별로 상이함
 -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등의 사용요금으로 사용량 검침 후 실비 부과

4.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cepa.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www.cepa.or.kr(지원사업-남부지소)
- 신청접수: 2026. 7. 1.(수) ~ 2026. 11. 30.(월)
- 신청방법: 이메일(mjj2025@cepa.or.kr) 제출 ※ 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041-404-1381)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상주기업	(사회적경제조직/소셜벤처기업/창업기업) 1.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3.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소셜벤처기업 판별통지서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7.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1부(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용) 8. 기타 증빙서류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반자료(해당업체에 한함) 9.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창업기업에 한함)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대표자 포함 구성원 모두 제출
	(예비창업자) 1.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3.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1부(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용) 4. 예비창업 관련 증빙서류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대표자 포함 구성원 모두 제출
등록기업	(공통) 1.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2. 시설사용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3.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소셜벤처기업 판별통지서, 예비창업 관련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및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창업기업에 한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대표자 포함 구성원 모두 제출

5. 선정방법 및 심사항목

(선정절차) (1차) 적격여부 검토 (2차) 입주심사위원회 평가

(선정방법)

- 신청서류를 입주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항목별 평가를 통해 평가 점수(평균 70점 이상)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 ※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 희망 호실 우선 배정
 - ※ 세부 평가결과는 미공개, 입주 호실은 선정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평가항목)

- 1차(서류): 적격여부 검토

평가항목	적격검토	
	여	부
- 공고상 입주 적격 자격 해당 여부		
- 국가 또는 도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제재 중인 자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 업력 7년 미만,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5인 미만 기업(창업기업)		

- ※ (등록기업) 1차 서류심사 후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업으로 선정

- 2차(서면평가):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평가

- 1차 적격여부 검토 완료 대상으로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 ※ 5~7인 내외의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총점 7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모집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동일한 모집대상 우선순위 중 충남지역 현안문제(탄소중립, 지역 소멸, 농촌, 농업 활성화 등)를 기업가치 목표로 설정한 기업을 우선 입주 지원하며, 이후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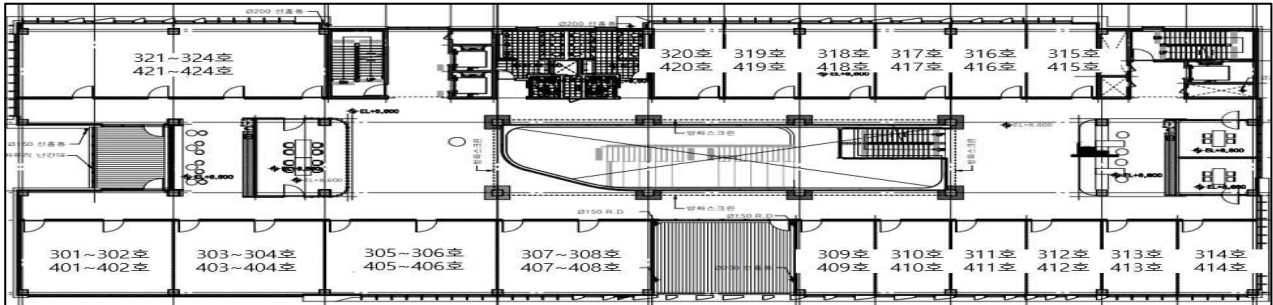
구분	세부 심사항목	배점
사회적목적 실현 (20점)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0
	사회적 기여 활동 이행여부(활동내용, 실적)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30점)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과 현실성	10
	입주 이후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효과적인 조직구성 및 운영 가능성	5
	사업계획의 지역사회 기여도	5
지속가능성 (20점)	입주 이후 성장 가능성(매출, 고용향상 등)	10
	사업의 확장 가능성과 파급효과	10
조직구성 (10점)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10
입주적합성 (20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취지 부합도 입주공간 활용 계획 및 공간 필요성	20

6.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공고문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 현장답사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입주희망자(상주기업, 등록기업)는 공고문에 첨부된 입주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상주기업은 입주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료(12개월분)를 선납하여야 함. 단, 임대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임대료 12개월분)으로 대체함
- 상주기업은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한 내 입주하지 못할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 후 연장할 수 있음. 단, 입주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음
- 상주기업은 입주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 또는 신설하여야 함
- (예비)마을기업은 본점 이전 시 인증(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주계약 후 내부 인테리어 등 기본시설의 변경은 원상 복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입주기간 만료 또는 입주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운영기관에서 원상 복구 후 해당 비용을 입주보증금(보증보험) 등에서 변제 조치함
- 상주기업은 연 1회 연간 사업실적 성과평가를 실시함
- 입주자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또는 인증(지정)이 취소된 경우, 익월부터 임대료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법령, 재산평가액 변화, 물가 등에 따라 입주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음

○ 3층/4층 배치도(34개소) ※ 회색 음영 임대완료



호실	임대면적(㎡)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전용	공용	합계	월 임대료(원) (유형A)	보증보험 가입금액	
301~302	65.07	70.63	135.70	200,560	2,406,720	
303~304	64.33	69.83	134.16	198,270	2,379,240	
305~306	70.34	76.36	146.70	216,810	2,601,720	
307~308	64.87	70.42	135.29	199,940	2,399,280	
309	33.01	35.83	68.84	101,730	1,220,760	
310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1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2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3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4	33.92	36.82	70.74	104,540	1,254,480	
315	30.88	33.52	64.40	95,170	1,142,040	
316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7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8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19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320	31.57	34.27	65.84	97,300	1,167,600	
321~324	132.17	143.47	275.64	407,390	4,888,680	
401~402	65.07	70.63	135.70	200,560	2,406,720	
403~404	64.33	69.83	134.16	198,270	2,379,240	
405~406	70.34	76.36	146.70	216,810	2,601,720	
407~408	64.87	70.42	135.29	199,940	2,399,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09	33.01	35.83	68.84	101,730	1,220,760	
410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1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2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3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4	33.92	36.82	70.74	104,540	1,254,4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5	30.88	33.52	64.40	95,170	1,142,04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6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7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8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제2종근생(제조업소)
419	31.86	34.58	66.44	98,190	1,178,280	
420	31.57	34.27	65.84	97,300	1,167,600	
421~424	132.17	143.47	275.64	407,390	4,888,680	